



감사·감사위원이 알아야 할 법·제도 동향



# 내부회계관리제도 법규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

2024.02.16

# 대규모 횡령사건의 빈번한 발생...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내실화 필요

금융감독원은 법규 위반 방지를 위해 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

## 회사 및 대표이사·감사 유의사항

회사의  
내부회계관리제도  
구축 및 공시 의무

대표이사·감사의  
내부회계운영실태  
보고 및 평가 의무

관련 제도·법규 및 유의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 
향후 법규준수 실태 점검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제도 운영·정착 유도

#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공시 의무

## 01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대상기업

모든 주권상장법인,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 비상장법인<sup>(1)</sup>

## 02 주요 유의사항

### 1. 내부회계관리규정 외 자원·인력 충분히 투입해 내실있게 운영!

#### 위반사례

내부회계 인력이 모두 퇴사하였음에도  
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아 제도가 운영되지 않음 ▶ 미준수

### 2. 필수 공시서류의 누락 여부를 꼼꼼히 확인!

#### 위반사례

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에 경영진의 운영실태보고서는 첨부했으나,  
감사(위원회)의 운영실태평가보고서는 첨부하지 않음 ▶ 미준수

<sup>(1)</sup>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1천억 원 이상인 사업보고서 제출법인과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및 금융회사는 대상에 포함됨  
출처: 금융감독원, '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'(24.01.26)



# 대표이사·감사의 내부회계 운영실태 보고 및 평가 의무

## 01 담당업무에 따라 상이한 내부회계관리제도 보고 의무

대표이사 → 주주총회, 이사회 및 감사<sup>(2)</sup>에게 내부회계 운영실태를 보고하고 기록·관리 의무

감사 → 이사회에 내부회계 운영실태 평가를 보고하고 기록·관리 의무

## 02 주요 위반사례

위반사례	
 대표이사	주주총회, 이사회 및 감사에 내부회계 운영실태를 보고하였다고 주장 그러나, <u>보고 기록이 존재하지 않아</u> 보고 여부 확인 불가 ▶ <b>미준수</b>
	주주총회에 내부회계 운영실태를 보고했으나, 이사회 및 감사에는 별도 보고 미실시 ▶ <b>미준수</b>
 감사	내부회계 운영실태 평가 의무 미이행 ▶ <b>미준수</b>

(2) 다만, 이사회 및 감사에 대한 보고는 내부회계관리자가 할 수 있음 (외부감사법 제8조의 4항)  
출처: 금융감독원, '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'(24.01.26)

# 금융감독원 향후 계획



01  
유관기관을 통해 지속적 관련 제도·법규 및 유의사항 안내 예정



02  
회사 경영진의 책임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유도 계획  
\*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 등 마련('23.12.29. 금감원 보도자료)



03  
2023년 재무제표 공시 이후 법규준수 실태 점검 및 내부회계  
관리제도 감리 등을 통한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·정착 유도